

유럽의 망중립성 규제 토론문

한국인터넷기업협회

2019.2.13

1. European net neutrality

- EU는 미국과 다르게 망중립성 관련 규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가다듬고 준수여부까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검증예정
- 유럽연합은 '15년에 망중립성 규정(Open Internet Regulation)을 통과 시키고 '16년에 각 회원국의 규제기관들을 위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
 - (망중립성 규정) 모든 트래픽은 차별, 제한, 간섭 없이 동등하게 취급하고 품질측정시에는 투명하고 동등하게 해야 함
 - (가이드라인) 오픈 인터넷 접속을 위한 세이프가드, 투명성 측정, 감독과 관리 및 벌칙 등으로 구분

1. European net neutrality

- 심지어 유럽연합은 망중립성 감시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망중립성 준수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
 - 현재 유럽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(ISP)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어 투명성에 문제가 있음
 - 이에 BEREC는 이번 감시시스템 개발을 통해 규제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
 - 감시시스템은 이용자-ISP서버 간 트래픽을 측정해 속도·혼잡도 등 망 기본 현황과 지연·차단 등 망 관리 실태를 확인
 - BEREC는 '망 중립성 감시시스템' 개발은 4분기 시작 예정으로, 개발이 완료되면 EU 회원국은 자율로 도입예정

2. Traffic management (also covering 5G discussion)

□ 5G는 망중립성 원칙들과 배치되지 않고 있음

- EU의 망중립성 트래픽관리 원칙들은 5G와 같은 망들에서 모두 허용이 가능하기에 상충되지 않는다고 판단
- 트래픽 정체시 관리가능,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허용, QoS보장 가입자 플랜 허용, 예외적 트래픽 관리 등은 모두 5G망에서도 허용

3. Specialised services (also covering 5G discussion)

- 우리나라의 '관리형 서비스(Specialised service)'는 도입시 규제의 필요성이 있었기에 규제가 있었던 것으로 선불리 허용되어서는 안됨
 - EU의 '관리형 서비스(Specialised Service)'는 규제를 위한 컨셉으로 도입하였으나 망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측면에서 판단
 - EU의 관리형 서비스는 VoIP나 IPTV처럼 일반망의 속도를 저해시키지 않기 위해서 필요
 - ISP의 관리형 서비스 허용은 일반망의 용량을 충분히 넘어설 때만 제공가능

4. IP interconnection (also covering charging)

- EU는 상호접속 분쟁발생시 일반적으로 규제의 간섭 없이 사업자들끼리 해결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으로 규제
 - 우리나라 상호접속고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트래픽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CDN등의 서비스 도입유인을 제거
 - 그러나 CDN은 상호접속 트래픽 용량한계 극복과 증가되는 트래픽 공유에 도움이 됨

- 우리나라 상호접속고시의 정산방식인 발신자 부담SPNP(Sending party network pays)방식은 수신(Receiving party network pays) 부담방식으로 전환검토 필요
 - TV시청시 TV를 보는 시청자가 비용부담이 원칙인데 인터넷은 콘텐츠를 보는 사람이 돈을 내지 않고 CP가 돈을 내야하는 구조

5. Zero-rating (challenging issue in Europe)

- 제로레이팅은 망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다른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핵심적으로 필요
- 과거 IPTV가 망사업자의 전유물이 된 것처럼 제로레이팅 시장도 망사업자들의 전유물로 끝나서는 안될 것

< 이상 >